

관악구 노외(건물식)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 감면

기준: 2024. 7.

구분	할인적용	관 악 구 조 례	적용지침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100% (면제)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스티커의 유효기간 확인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유효기만 만료 시 정상 요금 적용
100% (면제)	100% (면제)	구 주민등록 거주자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모자보건법」제2조제호에 따른 임산부 탑승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	· 관악구 관내 거주자 ·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 유효기만 만료 시 정상요금 적용
장애인	80%	「장애인복지법」제3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한다.	· 주차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 ·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요금 감면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상위 국가유공자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위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한다.	· 주차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지만 해당 ·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고엽제환자	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에 한함)
5.18 민주유공자	5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대상 : 부상자만 해당됨 (공로자 미 해당)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할 수 있다.	· 주차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을 통한 주차요금 할인 · 경차 :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 · 저공해차 :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저공해차 확인 [1~3종 검증 차량]
우수자원 봉사자	30%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	· 우수자원봉사증 유효기간 확인 ·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유효기만 만료 시 정상 요금 적용
병역 명문가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대조하여 할인적용

※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중복할인 금지)